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845
----------	-------

발의연월일 : 2026. 3. 30.

발 의 자 : 강선영 · 김미애 · 임종득
조지연 · 유용원 · 조정훈
이만희 · 박준태 · 주호영
고동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의 공평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을 기피하는 행위, 대리하여 응하는 행위,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유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병역면탈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구체적인 면탈 가이드라인이 공유되는 등 불법 정보 유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상향하여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1항, 제87조의2 등).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6개월”을 “1년”으로 한다.

제87조의2 중 “2년”을 “3년”으로,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7조(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제87조(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u>3년</u>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① ----- ----- ----- ----- ----- ----- ~~5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u>6개월</u>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 ----- ----- ----- ----- ----- ----- ----- ~~1년~~ ----- -----.
제87조의2(병역의무 기피 · 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 · 유통금지 위반) 제81조의3제1항을 위	제87조의2(병역의무 기피 · 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 · 유통금지 위반) -----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출 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 ----- ----- -----.
---	---